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10 선고 2023가단54027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상헌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4. 9. 26.

판결 선고2024. 10. 10.

주 문

1. 피고 B는 원고에게 20,414,850원 및 그중 3,391,113원에 대하여는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.04%의, 4,550,844원에 대하여는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.40%의, 7,972,264원에 대하여는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.51%의, 576,013원에 대하여는 2023. 10. 1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가.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12. 2. 체결한 증여계약을 20,414,85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20,414,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가. 피고 B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C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김재연

별지